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설치〉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6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5.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 (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금명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재 원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1.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2. 노후산업단지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3.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의 안전 지원 4.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지원 5.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관 리	◦ 산업통상부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노후설비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 나,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유해위

험시설 밀집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2025년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526개로 전체 산업단지 1,312개의 약 40퍼센트에 이르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중대사고 137건 중 132건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함.

특히 노후산업단지에서는 화재, 폭발, 가스 누출, 화학물질 유출 등 중대사고가 빈발하여 종사자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주변지역도 조성이 오래되어 병원과 문화시설의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에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해당 기금이 별도 자체재원 없이 정부 출연금 및 타 회계·기금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노후산단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설비 개선 사업은 연차별 계획과 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하며 이미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을 별도로 신설할 실질적 효과성도 부족하므로, 본 사안은 기금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²⁾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후 산업단지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특정 재원이라기보다 일반회계 등의 재원을 해당 사업에 활용하는 구조로, 기금 설치 요건에서 요구하는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계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후 산업단지는 입지 및 여건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장기 노후 산단에서 산업 재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금을 통한 탄력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민간 출연금·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재원의 확보 여부가 정부

의 재정 여건이나 외부의 출연 의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마지막으로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도 일반회계를 통해 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 인프라 개선 및 노후설비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통해 재원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회계에 비해 일정한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노후 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u>

문의처

02)6788-5151